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2023. 3. .

국 토 교 통 부
(건 축 정 책 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음. 다만, 건축물 관련 정보는 부동산, 리모델링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나, 고유식별번호 부재로 건축물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함. 또한, 등기촉탁, 건축물현황도 발급·열람 등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 및 건축물대장 서식에 대한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도입(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)

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,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

나. 등기촉탁 절차 개선(제26조제1항)

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

다.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대상 확대(제11조제3항)

①사무소·상가 임차인, ②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·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·열람 대상에 포함

라. 건축물 내 급수설비 파악(별지 제1호서식, 제3호서식, 제7호서식, 제10호서식)

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

수 있도록 항목 추가

마. 건축특례 사유 기재(제7조의5 및 제7조의6 신설)

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, 특별가로구역,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

바. 건축물대장 항목 개편(제2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)

전기차 주차장,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건축물 인증, 관련 주소, 구조현황 등 항목 조정 및 자구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5(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기재)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, 고시번호, 고시일자
2.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

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고시명, 고시번호, 고시일자
2.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7조의6(건축협정의 기재)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협정(이하 “건축협정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건축협정의 명칭
2.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,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
3.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
4. 건축협정의 내용 및 적용 특례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제4호 중 “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·시공 또는 중개”를 “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·시공·점검 또는 중개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5호 중 “건축물에 거주하는”을 “건축물의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건축물의 철거·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”를 “(건축물의 해체·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7일”을 “1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별표,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] <신설 2022. 0. 0.>

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(제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건축물대장

(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제2호의4서식까지)

항목	작성요령
가. 대지위치	1) 해당 시·도, 시·군·구, 법정동(法定洞)·법정리(法定里)를 적을 것 2) 법정동·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·리를 적고, 나머지는 “지번 관련 주소”란에 적을 것
나. 지번	1)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)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“대표되는 지번 외 ○건”으로 하나만 적고, “외 ○건”은 “지번 관련 주소”란에 적을 것 3)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“본번(本番) - 부번(副番)”의 형식으로 적되,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
다. 명칭	1)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)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 제부에 작성된 “건축물 명칭”과 각 동별 명칭 및 번호를 모두 적을 것
라. 호수/가구수/세대수	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,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가구수를 적으며, 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적을 것
마. 도로명 주소	1)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적을 것 2) 도로명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도로명주소를 적고, 나머지는 “도로명주소 관련 주소”란에 적을 것 3)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상세주소 및 참고항목은 적지 않을 수 있음
바. 대지면적	대지의 면적을 영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을 것
사. 건축면적	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을 적을 것

아. 건폐율	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을 것
자. 연면적	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을 적을 것
차.용적률 산정용 연면적	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을 적을 것
카. 용적률	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을 것
타. 지역, 지구, 구역	1) 대지가 속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·지구·구역의 명칭을 각각 적을 것 2) 지역·지구·구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·지구·구역을 적고, 나머지 지역·지구·구역은 “그 밖의 기재사항”란에 적을 것
파. 주구조	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적되,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적을 것
하. 주용도	1) 건축물의 용도를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되,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만 적을 것 2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·제3호·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·공동주택·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느 하나를 적을 것
거. 층수	주된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여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
너. 높이	건축물의 높이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
더. 지붕	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되,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재료 또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을 것
러. 부속건축물	1)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(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)을 적고, 세부 현황은 “건축물 현황”란에 적을 것 2)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의 합계를 적고 별지제3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적지 않을 것
머. 조경면적,	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

공개 공지 ·공간 면적	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적을 것
버. 건축선 후 퇴면적, 건 축선 후퇴 거리	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적을 것
서. 건축물 현황	1) 구분: 주된 건축물은 “주” 부속건축물은 “부”로 적을 것. 이 경우 부속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“부1”、“부2”、“부3” 등으로 적는다. 2) 층별: 지하층은 “지1”, “지2”, “지3” 등으로, 지상층은 “1층”, “2층”, “3층” 등으로 적되,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적을 것 3) 구조: 해당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되, 증축 등으로 새로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난에 적을 것 4) 용도 가) 층·구조·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,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 나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·제3호·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·공동주택·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해당하는 용도를 적을 것 5) 면적: 구분별·층별·구조별·용도별로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적을 것
어. 소유자 현황	1) 성명(명칭):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적되,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변경할 것 2) 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: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며,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을 것 3) 주소 가)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, 법인인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적을 것 나)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적을 것

	4) 소유권 지분: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소유자별 지분을 적을 것 5) 변동일·변동원인 가) 최초 작성시에는 신축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일란에 사용승인일을 적고, 변동원인란에는 “소유권 취득”으로 적으며,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일란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의 원인을 적을 것 나)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등기접수일과 변경의 원인을 적을 것
저. 지번 관련 주소,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	가목2), 나목2) 또는 마목2)에 해당하는 경우 적을 것
처. 건축주, 설계자, 공사감리자, 공사시공사(현장관리인)	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“대표자 ○○외 ○인”으로 적을 것
커. 주차장, 승강기, 하수처리 시설, 급수설비	1) 주차대수 및 면적, 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, 급수설비(「수도법」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)의 형식과 용량을 적을 것 2) 시설의 추가·변경·말소 등의 경우에는 “변동사항”란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을 것
터. 허가일	1) 최초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을 적을 것 2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을 것
퍼. 착공일	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자를 적되, 착공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적을 것
허. 사용승인	1)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

일	인일을 적을 것 2)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동별 사용승인일을 적고, 별지 제7호서식의 총괄표제부 중 “그 밖의 기재사항”란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며, 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3)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를 적을 것
고. 건축물 인증 현황	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, 에너지소비총량, 에너지성능지표(EPI) 점수, 녹색건축 인증,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인증명, 유효기간, 성능을 적을 것
노. 내진설계 적용 여부	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“적용”으로 적고, 그 밖의 경우에는 “비적용”으로 적을 것
도. 내진능력	1) 「건축법」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적을 것 2) 내진능력의 표기는 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3 제1호에 따를 것
로. 특수구조 건축물	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를 “해당(유형:)” 또는 “미해당”으로 적고, 해당인 경우 영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적을 것
모. 지하수위	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(임시)사용승인 신청서에 적힌 지하수위를 적을 것
보. 기초형식	지내력(地耐力) 기초와 파일 기초 중에 해당하는 것을 적고, 지내력 기초로 적은 경우 설계지내력을 t/m ² 단위로 적을 것
소. 구조설계 해석법	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
오. 관리계획 수립 여부	1)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“해당” 또는 “미해당”으로 적을 것 2) 「건축물관리법」 부칙<법률 제16416호, 2019. 4. 30.> 제4조에 따른 수립을 포함
조.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	1) 종류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,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중 최근 실시한 건축물 관리점검의 명칭을 적을 것 2) 점검유효기간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향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한을 적을 것

	3)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점검 현황은 “변동사항”란에 그 내용을 적을 것
초. 변동사항 (변동일, 변동내용 및 원인)	1) 소유권 변동 외의 변동사항만 적을 것 2) 옮겨 적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(가옥대장, 건축물관리대장 등)에 적힌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모두 적을 것
코. 그 밖의 기재사항	법 위반 내용, 타목2)에 해당하는 경우, 특별건축구역·특별가로구역·건축협정·결합건축 중 건축기준 특례사항을 적용한 사항 및 그 밖에 건축물대장의 유지·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적을 해당란이 없는 경우 적을 것

2. 집합건축물대장

(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4호의2서식, 별지 제4호의3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)

항목	작성요령
가. 건축물 현황	1) 층별: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 2) 구조: 구분별, 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 3) 용도 가) 층·구조·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,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,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 나)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“부속(부설)○○”로 적을 것
나. 호명칭	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적되, 층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와 한글로만 적을 것
다. 전유부분 · 공용부분	1)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을 것 2)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분점포인 경우로서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구조란에 “경계벽 없음”으로 적을 것 3) 공용부분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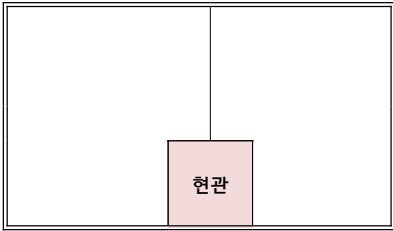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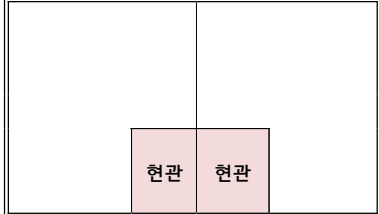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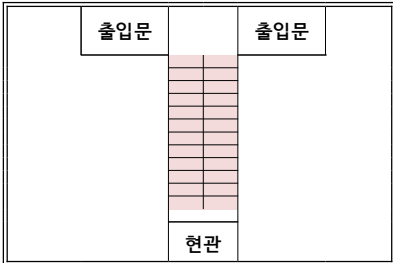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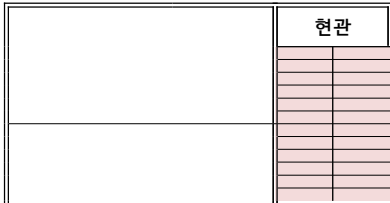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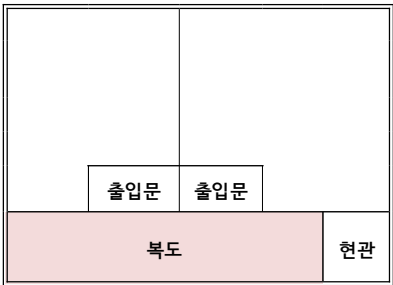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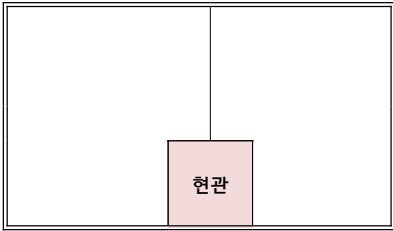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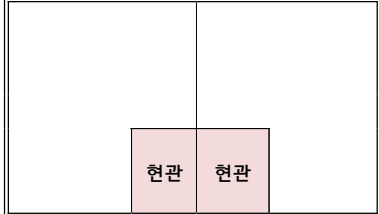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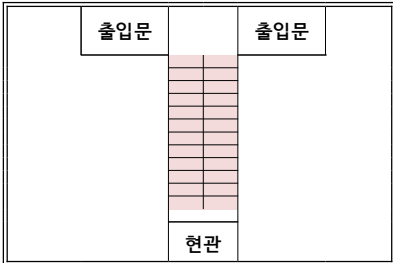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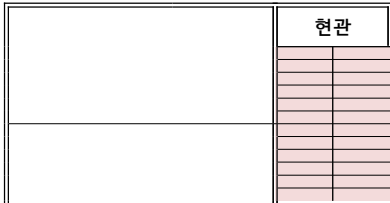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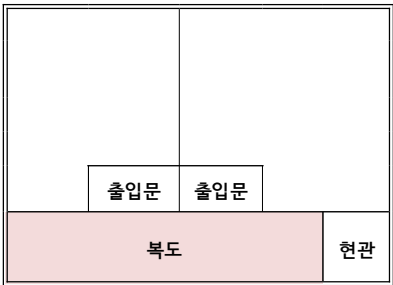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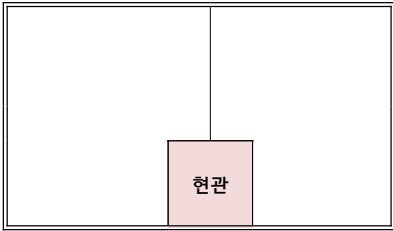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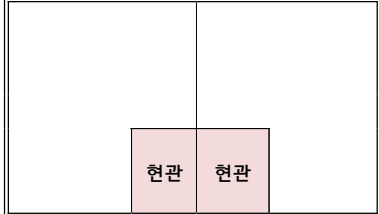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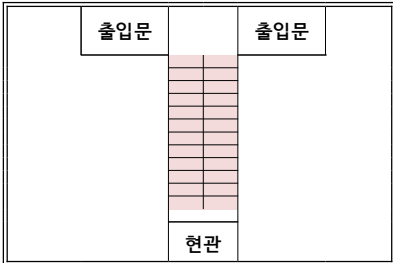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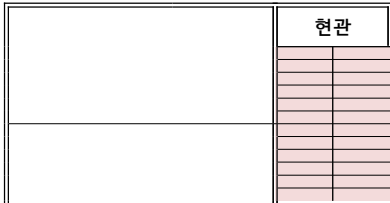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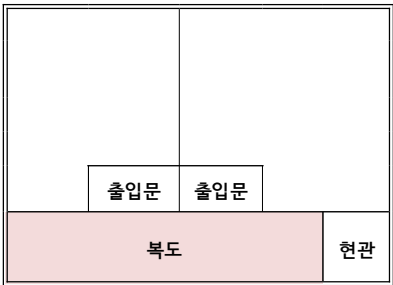
	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을 적을 것
라. 공동주택 (아파트) 가격	건축물의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되,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을 것
마. 그 밖의 항목	제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

3.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

(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)

항목	작성요령
가. 연면적、 용적률 산 정용연면적	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연 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
나. 건축물 수	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적을 것
다. 주용도	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적을 것
라. 총 호수/ 가구수/세 대수	하나의 대지에서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/가구수/세대수의 합계 를 적을 것
마. 총 주차대수	하나의 대지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
바. 건축물 현황	1) 명칭: 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적을 것 2) 건축물 구조: 동별 건축물의 구조를 적을 것 3) 건축물 지붕: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을 것 4) 층수: 동별 층수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
사. 특이사항	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을 것
아. 그 밖의 항목	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

4. 다가구주택의 호(가구)별 면적대장(별지 제9호서식)

항목	작성요령								
가. 호(가구)별 전용면적	호(가구)별로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</th><th>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<현관을 공동으로 사용> </td><td>  <단층 건물로서,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> </td></tr> <tr> <td>  <계단을 공동으로 사용> </td><td>  <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> </td></tr> <tr> <td>  <복도를 공동으로 사용> 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 : 외벽,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	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	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	 <현관을 공동으로 사용>	 <단층 건물로서,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>	 <계단을 공동으로 사용>	 <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>	 <복도를 공동으로 사용>	
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	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								
 <현관을 공동으로 사용>	 <단층 건물로서,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>								
 <계단을 공동으로 사용>	 <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>								
 <복도를 공동으로 사용>									
나. 그 밖의 항목	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								

5. 건축물현황도

항목	작성요령
가. 작성방법	1) 배치도·평면도 및 주차장도(주차장도가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

	표기되는 경우 주차장도는 제외한다)로 구분하여 적을 것. 이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음 2)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의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, 각 층의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1층 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3)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,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,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해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)과 시설물을 문자 또는 문자와 그림을 혼용해 표기하되, 그림으로만 표기하지 말 것 4)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있는 각 층의 평면도(해당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를 포함한다)와 전유부분인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되, 단위세대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 5)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여러 개로 통일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축물대장의 마지막에 각 층 평면도(전유부분별 번호를 적을 것)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한꺼번에 편철하고 각 전유부분 대장에는 편철된 도면의 번호와 형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6) 도면에는 기둥간격, 벽체의 길이,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등 주요 치수를 mm단위로 적고,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표시할 것 7) 기존 건축물을 증축.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(가옥대장, 건축물관리대장 등)를 폐쇄하고 그 내용을 증축.개
--	--

	축 또는 재축의 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 8) 도면의 축척은 1/50, 1/100, 1/200, 1/300, 1/500, 1/600, 1/1,000, 1/1,200, 1/2,000, 1/5,000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되,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건축물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, 평면도 등 같은 종류의 도면에 적용하는 축척은 동일하게 할 것 9) 제9조에 따른 도면작성자의 소속·직급(또는 직위)과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
나. 기재사항	1) 배치도: 대지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, 건축선(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주차장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, 주출입구·부출입구, 대지의 옹벽, 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, 그 밖에 건축물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2)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: 각 층의 평면 형태, 내부 주요칸막이, 객실용도, 승강기·화장실·방화구획 등과 주요 설비, 내부 주요 치수 등을 적을 것

일반건축물대장(갑)

건물ID		고유번호		명칭		호수/가구수/세대수	
대지위치				지번		도로명주소	
※대지면적 m ²		연면적 m ²		※지역		※지구	
건축면적 m ²		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m ²		주구조		주용도	
※건폐율 %		※용적률 %		높이 m		지붕	
※조경면적 m ²		※공개 공지·공간 면적 m ²		※건축선 후퇴면적 m ²		※건축선 후퇴거리 m	
건축물 현황					소유자 현황		
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m ²)	성명(명칭)	주소	소유권 지분
					주인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
							변동원인

이 등(초)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발급일: 년 월 일

담당자:
전 화: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인

※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대지위치				명칭				호수/가구수/세대수			
지번		지번 관련 주소		도로명주소							
				도로명주소 관련 주소							

구분	성명 또는 명칭	면허(등록)번호	※주차장					승강기		인허가 시기
건축주			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	승용 대	비상용 대	허가일
설계자		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	※하수처리시설	※급수설비	착공일
공사감리자		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	형식	형식	
공사시공자 (현장관리인)			전기차	대 ㎡	대 ㎡	대 ㎡		용량	용량	사용승인일

※건축물 인증 현황			건축물 구조 현황		건축물 관리 현황	
인증명	유효기간	성능				
			내진설계 적용 여부		내진능력	
			특수구조 건축물 (해당(유형:), 미해당)		지하수위 G.L m	
			기초형식: [] 지내력기초(t/㎡) [] 파일기초		구조설계해석법: [] 등가정적해석법 [] 동적해석법	

변동사항				그 밖의 기재사항	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	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

※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건축물현황도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도면의 종류	축척 1 :	도면 작성자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

일반건축물대장(을) 변동사항

(총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변동사항
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

일반건축물대장(을) 그 밖의 기재사항

(총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그 밖의 기재사항		그 밖의 기재사항	

대지위치				명칭				호수/가구수/세대수			
지번		지번 관련 주소		도로명주소							
				도로명주소 관련 주소							

구분	성명 또는 명칭	면허(등록)번호	※주차장					승강기		인허가 시기
건축주			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	승용 대	비상용 대	허가일
설계자		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	※하수처리시설	※급수설비	착공일
공사감리자		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	형식	형식	
공사시공자 (현장관리인)			전기차	대 ㎡	대 ㎡	대 ㎡		용량	용량	사용승인일

※건축물 인증 현황			건축물 구조 현황		건축물 관리 현황	
인증명	유효기간	성능				
			내진설계 적용 여부		내진능력	
			특수구조 건축물 (해당(유형:), 미해당)		지하수위 G.L m	
			기초형식: [] 지내력기초(t/㎡) [] 파일기초		구조설계해석법: [] 등가정적해석법 [] 동적해석법	

변동사항				그 밖의 기재사항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	변동일	

※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건축물현황도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도면의 종류	축척 1 :	도면 작성자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

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을) 변동사항

(총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변동사항
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

건물ID		고유번호			명칭		호명칭	
대지위치					지번		도로명주소	
공 용 부 분					공동주택(아파트) 가격 (단위 : 원)			
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기 준 일		공동주택(아파트) 공시가격	
					*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만 표시됩니다.			
변동사항								그 밖의 기재사항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		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		

건축물현황도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명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도면의 종류	축척 1 :	도면 작성자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

※ 건축물현황도는 단위세대평면도만 작성하며,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을) 소유자현황

(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명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소유자현황

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	변동일자	변동원인
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을) 변동사항

(총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호명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변동사항
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갑)

건물ID		고유번호		건축물 명칭	특이사항	
대지위치			지번	도로명주소		
대지면적	m³	연면적	m³	지역	지구	구역
건축면적	m²	용적률 산정용 연면적	m²	건축물 수	주용도	
건폐율	%	용적률	%	총 호수/가구수/세대수	총 주차 대수	부속 건축물 동 m³
조경면적	m²	공개 공지/공간 면적	m²	건축선 후퇴면적	건축선 후퇴거리 m	

건축물 현황

구분	명칭	도로명주소	건축물 주구조	건축물 지붕	층수	용도	연면적(m ²)	변동일	변동원인

이 등(초)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발급일: 년 월 일

담당자:
전 화: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인

대지위치				명칭				특이사항			
지번		지번 관련 주소		도로명주소							
				도로명주소 관련 주소							

구분	성명 또는 명칭	면허(등록)번호	주차장					승강기		인허가 시기
건축주	※※	※※	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	승용 대	비상용 대	허가일 ※※
설계자	※※	※※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	하수처리시설	급수설비	착공일 ※※
공사감리자	※※	※※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	형식	형식	※※
공사시공자 (현장관리인)	※※	※※	전기차	대 ㎡	대 ㎡	대 ㎡		용량	용량	사용승인일 ※※

건축물 인증 현황			건축물 구조 현황			건축물 관리 현황	
인증명	유효기간	성능					
			내진설계 적용 여부 ※※		내진능력 ※※	관리계획 수립 여부 (해당, 미해당)	
			특수구조 건축물 ※※ (해당(유형:), 미해당)		지하수위 ※※ G.L m	건축물 관리점검 현황	
			기초형식: ※※ [] 지내력기초(t/㎡) [] 파일기초		구조설계해석법: ※※ [] 등가정적해석법 [] 동적해석법	종류	점검유효기간

변동사항				그 밖의 기재사항	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	변동일		변동내용 및 원인

※※ 표시 항목은 동별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적고, 동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(갑) 및 집합건축물(표제부, 갑)에 적습니다.

건축물현황도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특이사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도면의 종류	축척 1 :	도면 작성자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건축물현황

(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특이사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건축물 현황

[illegible]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변동사항

(총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특이사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
변동사항

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	변동일	변동내용 및 원인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그 밖의 기재사항

(총1쪽 중 제1쪽)

건물ID	고유번호	명칭	특이사항
대지위치	지번	도로명주소	
그 밖의 기재사항		그 밖의 기재사항	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현황도 열람·발급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 (개인)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연락처		
신청인 (법인 또는 단체)	법인·단체명	법인등록·고유번호		
	대표자	연락처		
신청 건축물 주소	대지위치 도로명주소			
신청내용	신청구분	[] 발급 (부) [] 열람		
	건축물현황도	[] 층 평면도 ()층 [] 단위세대평면도 ()호		
용도 및 목적	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의 열람·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귀하

유의사항				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7호 관련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(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니다)로서 이용자의 안전,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,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.			
수수료	구분	신청 항목	방문 신청	인터넷 신청
	열람	건축물현황도	1면당 100원	무료
	발급	건축물현황도	1면당 100원	무료

210mm×297mm(백상지80g/㎡)

건축물대장 []생성 []재작성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5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 (건축주)	성명(또는 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		
	주소 (전화번호:)			
	구분	※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비사업조합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, 정부투자기관, 주택조합, 일반법인, 건설사업자, 개인,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
	등기촉탁 희망여부	[]희망함 []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.		
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			
대지위치	지번			
지번 관련 주소				
도로명주소				
도로명주소 관련 주소				
용도지역		용도지구		용도구역
대지면적	연면적	건축면적	용적률 산정용 연면적	
건폐율	용적률	주구조	주용도	
층수	높이	지붕	부속건축물	
조경면적	공개 공지/공간 면적	건축선후퇴 면적	건축선후퇴 거리	
m ²	m ²	m ²	m	

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80g/㎡)

건축주		성명:							
설계자		성명: 자격(면허)번호 및 신고(등록)번호							
공사감리자		성명: 자격(면허)번호 및 신고(등록)번호							
공사시공자 (현장관리인)		성명: 자격(면허)번호 및 신고(등록)번호							
주차 장	구분	옥내		옥외		인근		면제	
	자주식	대	m ²	대	m ²	대	m ²	대	
	기계식	대	m ²	대	m ²	대	m ²		
	전기차	대	m ²	대	m ²	대	m ²		
승강기		승용				비상용			
		대				대			
하수처리시설		형식				용량			
						(인용)			
급수설비		형식				용량			
						(m ³)			
허가일		착공일				사용승인일			
※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		※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		※ 에너지 성능지표 (EPI)점수		※ 녹색건축 인증		※ 지능형건축물 인증	
등급		등급		점		등급		등급	
에너지 자립률	%	1차에너지 소요량(또 는 에너지 절감률)	kWh/m ² (%)	※ 에너지 소비총량	인증 점수	점	인증 점수	점	
유효기간	유효기간	유효기간		유효기간		유효기간		유효기간	
...	...	...		kWh/m ²		...		...	
내진설계 적용 여부		내진능력		특수구조 건축물 (해당(유형:), 미해당)		관리계획 수립 여부 (해당, 미해당)			
지하수위	G.L m	기초형식 (지내력기초(t/m ²), 파일기초)		구조설계 해석법 (등가정적해석법, 동적해석법)		관리점검 현황 (종류:) (점검유효기간:)			

그 밖의 기재사항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(일반·집합)건축물대장의 생성·재작성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[illegible]

Ⅱ.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

•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

※ 다가구주택의 호(가구)별 면적 (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)

호(가구) 구 분	층 구분	호(가구)별 전용면적(㎡)	호(가구) 구분	층 구분	호(가구)별 전용면적(㎡)

III.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

•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호명칭						
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전유부분						
공용부분						
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소유자						
현황						
호명칭						
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전유부분						
공용부분						
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소유자						
현황						
호명칭						
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전유부분						
공용부분						
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소유자						
현황						

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	------

7일

소유자	성명(명칭)
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
	주소

구 분		(변경)전 내용	(변경)후 내용	사유
분리	대지위치 (건축물명칭)			
결합	대지위치 (건축물명칭)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현황측량성과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	

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성명 또는 명칭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	

집합건축물	대지위치	지번	그 밖의 사항
대장(표제부)	건축물 명칭 · 번호	호수	
의 기재사항	주용도		

집합건축물 대장(전유부) 의 기재사항	호명칭						
	구분	(주 · 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	비고
	전유						
	부분						
	공용						
	부분						
	소유자	현황	주민(법인)등록번호		주소		소유 권 지분

※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,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.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물 등기사항증명서	

집합 건축물 대장(전유부) 의 기재사항	호명칭						
	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	전유 부분						
	공용 부분						
	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	소유자 현황						

집합건축물 대장(전유부) 의 기재사항	호명칭						
	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	전유 부분						
	공용 부분						
	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	소유자 현황						

집합건축물 대장(전유부) 의 기재사항	호명칭						
	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	전유 부분						
	공용 부분						
	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	소유자 현황						

집합건축물 대장(전유부) 의 기재사항	호명칭						
	구분	(주·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
	전유 부분						
	공용 부분						
	구분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
	소유자 현황						

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

-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발급일		처리기간 7일	
일반건축물대장(표제부)의 기재사항						그 밖의 사항	
대지위치				지번			
도로명주소							
건축물 명칭				주용도			
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비고		
건축물							
부속 건축물							
구분	성명 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		소유권 지분	
소유자현황				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
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	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
건물 등기사항증명서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
할 수 있습니다.

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(분할·합병)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대지위치	지번
------	----

도로명주소

건축물 명칭

분할 , 합병 전 내용	호명칭					
	구분	(주 , 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
	전유 부분					
	공용 부분					
	소유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	현황	소유권 지분	주소			
분할 , 합병 후 내용	호명칭					
	구분	(주 , 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
	전유 부분					
	공용 부분					
	소유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	현황	소유권 지분	주소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
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(분할·합병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물 등기사항증명서	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분할 、 합병 전 내용	호명칭					
	구분	(주、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
	전유 부분					
	공용 부분					
	소유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	현황	소유권 지분	주소			
분할 、 합병 후 내용	호명칭					
	구분	(주、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
	전유 부분					
	공용 부분					
	소유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	현황	소유권 지분	주소			
분할 、 합병 전 내용	호명칭					
	구분	(주、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
	전유 부분					
	공용 부분					
	소유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	현황	소유권 지분	주소			
분할 、 합병 후 내용	호명칭					
	구분	(주、부속) 건축물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 (㎡)
	전유 부분					
	공용 부분					
	소유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)			
	현황	소유권 지분	주소			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
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소유자 []변경 []정정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□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대지위치		지번		
도로명주소				
명칭		호명칭		

(변경 、 정정) 전			(변경 、 정정) 후			변동구분
성명(명칭)	주소	지분	성명(명칭)	주소	지분	변동일자
주민(법인)			주민(법인)			변동원인
등록번호			등록번호			
(부동산등기용			(부동산등기용			
등록번호)			등록번호)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제2항、제3항 제21조
[]변경
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을 신청합니다.
[]정정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、군수、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: 없음 2.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(특별자 치시장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이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) 나.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. 「공증인법」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 증된 사서증서의 등본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 산거래의 신고를 하고,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 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물 등기사항증명서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5(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기재)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</u> <u>1.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, 고시번호, 고시일자</u> <u>2.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</u> <u>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</u> <u>1.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고시명, 고시번호, 고시일자</u> <u>2.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6(건축협정의 기재) ① 허</u>

제11조(건축물대장 등본·초본의 발급 및 열람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	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협정(이하 “건축협정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건축협정의 명칭 2.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,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.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. 건축협정의 내용 및 적용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 제11조(건축물대장 등본·초본의 발급 및 열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하게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
의 설계·시공 또는 중개 등
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
해 신청하는 경우

5.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
차인(賃借人)이 신청하는 경
우

6.·7. (생략)

④ ~ ⑨ (생략)

제22조(건축물의 철거·멸실 등에
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① ~
④ (생략)

제26조(등기촉탁의 절차 등) ①법
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
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
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
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
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
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소유자나 관리자로
부터 건축물의 설계·시공·
점검 또는 중개 -----

5. --- 건축물의 -----

--

6.·7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건축물의 해체·멸실 등에
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등기촉탁의 절차 등) ① -

----- 1개월 -----

-----.

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개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